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50630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5. 9. 16.

판결 선고2015.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238,241원과 그 중 43,261,158원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5.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B, C, D, E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3,261,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5.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0. 4.경 피고 B 및 소외 F 등의 제안으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 A을 위한 허위 재직 서류(G 주식회사)는 피고 C이 발급해 주었고, 허위 주택임대차 서류는 피고 E가 임대인으로서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E는 위와 같은 부당대출에 관한 피고 D의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인천 서구 H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A,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갑7-2)를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7-1)를 원고의 수탁기관이자 대출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3)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2010. 11. 12.경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피고 E가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피고 A에게 보증원금 4,41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한 후 대출금융기관으로서 4,9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을 위 피고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피고 A과 B, F 등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아 사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1. 6. 2. 중소기업은행에게 44,861,17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후 피고 A으로 1,600,0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43,261,158원이다.

7) 피고 E는 2014. 11. 6.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06 판결에서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자신이 작성해 주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부당한 전세자금 대출과 이를 위한 원고의 신용보증의 기초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원고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43,261,158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함께 부당 대출에 관여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는 피고 D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를 공모한 바 없고, 그 범행의 상대방도 중소기업은행일 뿐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사이에 전체 불법행위에 관한 공동의 인식이나 모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관련성을 갖고 공동으로 결합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면 손해에 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공동불법행위자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일부 가담자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책임 감경을 고려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을 통한 대출금 편취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기망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불법행위와 그 결과 신용보증을 제공하기에 이른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 E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43,261,158원 및 이에 대하여 현실적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5.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율)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김성수

별지